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703호

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)로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)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8호(1999.3.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0호(2006.4.13), 중구고시 제2014-100호(2014.12.4), 중구고시 제2016-34호(2016.4.21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중구 남대문로 5가 395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2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 나.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
 다. 시행면적 : 20,350.7㎡ (대지 20,016.2㎡, 정비기반시설 334.5㎡)
 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성 명 :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 (대표이사 이자상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(남대문로5가)
 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 바. 건축계획

구 분	내 용			비고
	기 준	증 축	합 계	
건축면적	9,237.39㎡	2,195.75㎡	11,433.14㎡	
건폐율	57.12%			
연면적	82,856.46㎡	38,117.40㎡	104,955.88㎡	
용적률	524.35%			
층 수	지하2/지상23층	지하6/지상20층		
높 이	85.37m			
용 도	숙박시설			

- 사. 공람내용 :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 관계서류
 아. 공람기간 : 2016.10.26. ~ 2016.11.09.
 자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74)
 차. 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705호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0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6조에 따라 신설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구 도시계획관련 정책사항을 발굴함으로써 구민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도심재생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문의전화 : 3396-5755, FAX : 3396-8777, 메일 : 20130319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(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제17조(설치 및 기능)

-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
-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
 2.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
 3.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 4.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
 5.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

제18조(기획단의 구성)

-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정책사항의 추진시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9조(기획단의 운영 등)

-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.
-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③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부지도·감독을 한다.
- ④ 별도의 단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<신 설> 제17조(설치 및 기능) <신 설>	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7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 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.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 3.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 4.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 발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 5.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
제18조(기획단의 구성) <신 설>	제18조(기획단의 구성)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 ② 정책사항의 추진시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 원을 둘 수 있다.
제19조(기획단의 구성) <신 설>	제19조(기획단의 운영 등)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장이 관장한다.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. ③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부지도·감독을 한다. ④ 별도의 단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 다.